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0년 01월 20일 이명순의원이 발의하고, 2020년 02월 0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입법예고 예외 사항을 기술하여 표현함으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하며, 군민의 행정참여인 입법예고제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최소한의 입법예고 기간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조문만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 표현을
서술적으로 기술(안 제3조)
- 나. 입법예고기간 예외사유인 특별한 사정을 특정하여 기술하며,
예고기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할 수 있음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개정(안 제6조)
- 다. 부서명에서 직무중심명칭으로 변경하고자 기획실장을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군민의 행정참여인 입법예고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
최소한의 입법예고 기간을 보장하고자 함이 조례개정의 취지가
있으며

○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법조문만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 표현을
서술적으로 기술하며,

안 제6조에서는 입법예고기간 예외사유인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예고기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할 수 있음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개정(안 제6조),

부서명에서 직무중심명칭으로 변경하고자 기획실장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안 제6조)하는 내용입니다.

○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안의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예고하고, 공개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이상으로 한다.

행정절차법령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군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살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20일 미만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부서장의 판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입법예고의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인 점,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최단 입법예고 기간 단축하려는 경우 법제처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분에서

자치법규인 경우 법제처장과 같은 역할이 없다는 점 등을 참고해 볼 때, 입법예고 최소한의 기간보장으로

“20일 미만”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의 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단축할 수 있는 사유인 특별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평창군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 2019. 10. 29. ~ 11. 03.(6일간)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019. 10. 26. ~ 10. 28.(3일간)

- 평창군 포함 11개 시군의 강원도 내 입법예고관련 조례는 우리군과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전국적으로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기간을 두어

개정안을 따르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특별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은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에서 조례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한

바람직한 경우로서 규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개정에 반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 12. 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22.>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5. 3. 8.>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 및 계획
2. 환경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등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제도 및 계획
3. 상수도의 단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정책·제도 및 계획
4. 사회기반시설 등의 건설·설치, 학사제도·전용차로제의 조정·변경 등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제도 및 계획
5. 그 밖에 행정청이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제도 및 계획

[전문개정 2004. 11. 11.]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제도 및 계획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제도 및 계획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1. 11.]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행정청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담당자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11. 11.]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①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예고를 한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11. 1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0.>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0.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0. 10. 5.]